

第 34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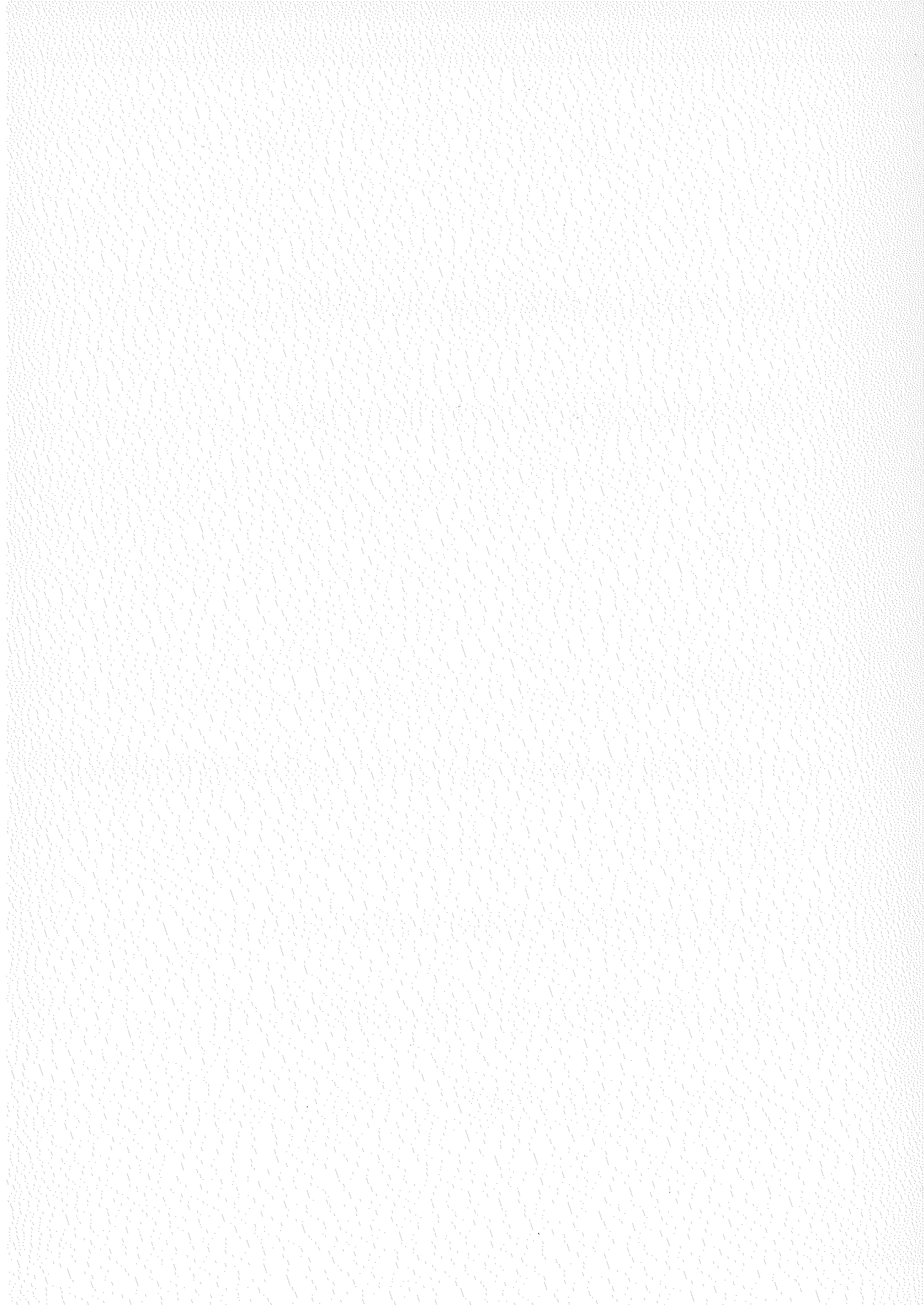
會 議 錄

('94. 2. 2 ~ 2. 3)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3
3. 부 록	
가) 의사일정(안).....	33
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 례안.....	35
다)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41
라)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51
마)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 계획안.....	63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4년 2월 2일 (수요일) 14시 00분

의사일정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계획안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
2. 제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계획안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00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
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4시 02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1. 경과보고

(14시 03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1월 25일자로 집회
요구가 있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
고 제94-2호로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33회 임시회 의결안건처리
입니다.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을 1월 15일 집행기
관에 이송하였고, 동 조례안은 1월19
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1월29일 제98
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금회처리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위원발의 안건으
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심사기
일연장의 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
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생야영

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과학교육원이전 계획안을 처
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4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 대로 제34회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2월 2일부
터 2월3일까지 2일간으로하여 우리
교육위원 발의 안전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전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제34회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2월2일부터 2
월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
례 중 개정 조례안

(14시 05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
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
정에 따른 것으로 편의상 의사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국장 이근수

의사국장 이근수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
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
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
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이 금

년 1월 27일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에 관한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3항과 제4항, 그리고 제4조 별표 직급별란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그리고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나누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죠.

아시다시피 본 개정조례안은 의사국 직원의 직급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 간단하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4시 07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한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

정령 대통령령 제14042호, 93년 12월 1일자의 개정에 의해서 교육행정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직급 명칭 중에 "교육행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무총리 지시 제3호 총무처(93년 4월 23일)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위원회" 명칭을 "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를 "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칙에 제2조에 의거 명칭 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내용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 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

주사"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개정하고 "자문위원회"를 "자문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그리고 국무총리 지시 제3호에 의한 것이며 조례안과 덧붙임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에 의해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이 좀 많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단순한 명칭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별첨3

(끝에 실음)

● 의장 김영세

예, 저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것 동의하시죠?

("중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됐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이상 설명드리고 두번째.....

(한 위원 거수)

● 의장 김영세

예, 질의는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중등교육국장이 야영장 건이 남았다고 말함)

예, 야영장 것 설명하시죠.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기 위하여 청원학생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중개정령에 의거 "교육행정"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직급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1년 3월 1일자로 폐교

된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593번지에 위치한 미원국민학교 운암분교장을 학생야영장으로 전용코자 청원 학생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행정직렬의 신설에 따라 "지방행정사무관"를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제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덧붙임, 기타 참고사항도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4

(끝에 실음)

● 의장 김영세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좌석으로 돌아감)

본 개정조례안들에 대하여도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 대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2차 본회의

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계획안

(14시 13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 다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과학교육원이전계획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의 목적과 사유, 과학교육원의 운영 목표는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의 탐구학습 및 교원의 연구·연수활동을 조장·지원하여 첨단 과학시대를 주도할 능력있는 사람을 육성하고 교육현장을 선도하며, 국민생활 과학화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로 명시된 바, 현 위치는 도심지 청주에서 15km 떨어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23번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여 상설전시물 관람 등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과학교육원 본래의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 및 교원 일반인의 내방의 편의를 도모하고, 첨단과학기술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청주시 중심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과학교육원 본래의 역할과 학생들에게 과학의 꿈을 갖게 함으로써 과학기술교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 시기로는 95년 3월 1일까지 완전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 위치는 청주시 수동 180번지 위치한 현 교동국민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충북 과학교육원 활용계획은 과학고등학교 학급수를 증설·모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전지 시설 활용배치계획은 이전이 결정되는 대로 세밀한 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설계안을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충북과학교육원의 조직 및 주요사업, 조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 조>

이재회, 김광수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충청북도과학교육원 이전계획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별첨 5

(끝에 실음)

예, 이의없으시죠.

● 의장 김영세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재회, 김광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들을 향해)

이 유인물로 대체하는 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제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좌석으로 돌아감)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산회)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회,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광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
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 별첨 2
-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3
-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4
-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계획안 : 별첨 5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4년 2월 3일 (목요일) 10시 30분

의 사 일 정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3.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4.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 계획안
5.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심사기일 연장의 건
6. 기타안건 처리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4.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 계획안
6.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심사기일 연장의 건
7. 기타안건 처리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10시 31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과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심사기일 연장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회후 오후에는 남일국민학교 과학관을 방문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홍신회위원님께서도 조금 늦으신다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의 그 내용에 불적에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라고 이렇게 "교육"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저 맨 뒷장 4페이지를 보면 9급, 8급, 7급, 6급, 5급까지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라고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4급부터는 그게 안들어있어요.

지방서기관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저기는 교육서기

관이라고 하는게 안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들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 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거 답변하세요.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국장 이근수

의사국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급 이상은 '교육행정'이 안들어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했는데 그건 5급까지만 직급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은 원래 그 행정이니 재정이니 그 건축 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서기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그렇게 불적에 사무관까지는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직같은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의사국장 이근수

전직은 할 수가 있는데요, 전직 절

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서기관 이상은 그런 거 상관 없이 인사가 되고요.

● 의사국장 이근수

예.

● 의장 김영세

됐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하고 대답)

예, 다시 질문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됐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기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4.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0시 35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들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 계획안

(10시 36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과학교육원 이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일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상일 부의장 하세요.

● 부의장 이상일

이상일 위원입니다.

청원군에 있는 과학교육원을 교동국민학교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대충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는지 추산이 한번 되셨는지 하는 거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전액 배정이 가능한지 하는 거하고 또 물론 인제 현재 과학교육원에 있는 기자재를 대부분 옮겨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제 내부라든지 또는 새로운 첨단 장비를 도입할 때 대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훌륭한 시설의 것을 좀 모델이라고 할까 그걸 참조로 해서 참 신형으로 발달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그 두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일괄 질의하시고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은.....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김응복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응복 위원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에 인제 나와있는데요.

교육부 이전계획 승인을 말아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신청을 해야하고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됐습니다마는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같은 것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뭐 아무런 이의없이 계획대로 되시겠느냐를 좀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오늘 지금 교육중이

기때문에 당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과학기술과장 정기우입니다.

첫번째,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동국민학교자리로 이전할 때에 예산의 추산은 어느정도이고 내년도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54억3,3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 94년도 금년도에 18억9,000만원정도 확보가 돼있고, 95년도에 36억2,300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의장 이상일

지금 말이죠, 금년도에 18억이고 95년도에 36억 정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 직접교육비로 투자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디 별도로 무슨 예산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 의장 김영세

그것은 저 이때 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직접교육비로 가능한 건가, 안한건가 하는 거요.

이 과학기술과에서는 그 예산내역을 잘 모를테니까.

예, 또.....

● 부의장 이상일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음 계속하세요, 답변을.

●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그 다음에 김응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부 승인이라든가 도시계획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 계획대로 추진되겠느냐"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교육부에 이미 승인 신청이 할 준비가 다 돼있구요, 그리고 도시계획협의 관계는 그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있죠.

이상일위원님이 질문한 게 또 하나 있죠.

가장 이상적인 시설방안이 어떤 형식으로 될, 구상하느냐

●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예, 그 문제는 지금 교육부에서 기자재 구입비로 1억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 "기자재 신형 모델이라든가 어떤 모형으로 만들거나"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확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우선 이게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여기서 보내가지고 계획을 짜서 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상일

그 타도예나 인제 그런 데 보면은 대

단히 그 활용한 학생수도 많고, 교사들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좌우간 여러군데 좀 다녀보시고 그래서 그 관람할 수 있는 거, 또 그 기자재의 배치라든지 또는 활용이라든지 여기도 나왔지만 요 근래 폐수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라든지 여러가지를 좀 앞서가는 충북교육답게 좀 선진적인 거를 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여러군데를 좀 보셔가지고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군데 좀 자문을 구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지금 저 이상일위원 말씀한 내용중에 더 부연하면요, 앞으로 그 과학실험실도 역시 거기서 나오는 실험되어 나오는 그 여러가지 실험용수에 대해서 그 저 정화시설이 철저히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강구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그 계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 행정과장님 아까 그 한번 나와서 말씀하시죠.

가만있어보세요.

과학기술과장한테 더 보충질의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됐습니다.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예산지침상으로 현재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의 투자는 직접교육비의 투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간접교육비의 투자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될 과학교육원의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1차적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신청절차를 거치고 만약에 거기서 얼마의 예

산지원이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이 결정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교육감 재량사업비인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그 과학교육원이 이전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부의장 이상일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런데 그거 그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나는.

웬고하니 간접사업비 투자가 신규에 역제가 되어있는 것이지 이것은 이전이기때문에 계속사업성을 갖고 있어요.

계속사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앙 교육부의 교부금을 많이 얻는 것이 도움이 되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외에 여기 예산으로도 편성가능한 것으로도 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행정과장 이상찬

이게 저 행정기관 이전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맡을 때에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도 같이 겸해서 아마 거론이 될겁니다.

● 의장 김영세

이거는 행정기관이 아니지, 연구기관이지.

● 행정과장 이상찬

교육연구기관이죠.

● 의장 김영세

예, 교육연구기관이지.

● 행정과장 이상찬

같이 승인을 맡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일단은 그 사업을 승인한 이상, 제일 먼저 특별교부금에 의한 예산확보를 저희로서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우선 저 그렇게 강구하시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 의견은 이것은 계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 부의장 이상일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드릴 것은 여러가지로 우리 도내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입국 중에서도 이 과학교육을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 뭐 다 잘 아는 거니까 다른데 예산을 좀 쪼개서라도 정말 전국적으로 어디내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과학관이 돼서 청주·청원뿐만 아니라 도내의 우수한 학생들, 교사들이 정말 맘놓고 여기와서 실험실습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더이상 질의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뭐 이의 없으
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과학교육
원 이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6.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심사
기일 연장의 건

(10시 49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징계·자격
심사소위원회 심사기일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응복 위원님 외 3인으로
부터 징계건에 대한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심사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
한 바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7. 기타안건 처리

(10시 50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재희위원 말씀하세요.

● 이재희 위원

예, 이번 임시회는 이 질의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지역에 그 여론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관계국장님도
참석을 안하셨지만 상당히 시간이 급
한 문제같이 생각이 돼서 부교육감님
이하 각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
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에 그 급식학교가
상당히 많이 인제 이렇게 늘어져 있
는데 금년에 그 급식을 실시하는 학
교에는 한 사람의 정규직원도 배치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일용잡급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제천같은 학교 큰 학교는 천명을 급식하는 학교에도 한명의 정규직원도 배치가 안되는데 비해서 제천에 있는 광산고등학교나 단양에 있는 기계공고는 100명도 안되는 그 기숙생을 위해서 6명의 정규직원이 배치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교장들은 상당히 불평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산고등학교하고 단양공고를 제가 심방을 해서 그 운영사항을 좀 살펴보니 사실은 학교장들이 그 기숙사 운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하루에 도시락을 두개 세개 싸오고 아니면 점심시간, 오후 저녁시간에는 학부형들이 줄을 서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학교 식당이 아주 절실히 필요해서 교장이 학부형 또는 동창회에 호소를 해가지고 어떤 학부형한테 3천만원 기증을 받아서 식당을 하나 기증받고 아주 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그 학생들 먹는 걸 한번 참관해달라고 해서 저도 가서 한끼를 먹어봤는데 제천고등학교의 그 운영사항을 보면은 어머니 회장을 70만원을 주고 조리사 두사람을 50만원해서 170만원 급여를 주고 부족되는 인원은 어머니 그 봉사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학교장 얘기는 "300명 먹일 밥을 하면은 실지로 식권이 받아들이는 건 200명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낮에 같이 먹어보니까 밥을 나눠주는 그 사람들이 이게 학부형들 봉사받는 사람들인데 학생들 밥 먹는데 밥그릇, 찬그릇 가져와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00명분이 200명분밖에는 안되는 이러한 그 아주 그 경영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까지 제천고등학교에는 한끼당 1200원을 받는데 약300만원의 흑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달에 그 자율학습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100만원 적자때문에 현재는 200만원밖에 흑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성의껏 운영하는

걸 봤고 광산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그 기숙을 하는 학생이 5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인제 체육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 미만의 점심을 해주고 있고 단양공고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는 한 150명 또 3학년들이 실습을 나가면 10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숙사에 들어있는 학생은 적더라도 학생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 희망하면 점심식사를 제공해 줄 수 없느냐?" 뭐 국민학교는 5,6백원 내면은 점심을 잘 먹는데 어짜피 수억원을 투자했으면 조금이라도 더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점심이라도 아주 싼값에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단양공고의 경우에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걸 권장을 안하고 인근에 있는 단산국민학교 교직원은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양공고에 기숙사로만 들어 놓은 그 취지를 교장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양은 벽지고 또는 농촌소득이 적고 지역학생을 유치하기위해가지고

저렴한 그 학비때문에 학생들 이용하라고 기숙사를 만들어 놔는데 학생들한테 권장을 안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선생님들한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지로 식당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영양사 대답이 밥을 만드는 시설이 그 밥을 짓는 그 밥솥이 200명분밖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억을 투자를 했는데 돈천만원 주면은 한 200명 쓸 수 있는 밥솥을 사가지고 전교생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데 이런 걸 왜 교장선생님이 좀, 좀 더 생각을 안하는가 좀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고 또 광산고등학교에 가서는 사실 광산고등학교는 개교당시에 전국규모의 학생을 모집을 해가지고 전원 기숙을 했기 때문에 기숙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제천 인근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필요없는 겁니다 단양공고는.

그 교장선생님한테 이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거냐, 인건비에 비해가지고 너무 이게 낭비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교장이 "금년도에 전기 기

계과를 신설하면 북부에 공동실습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는데 이거는 학과가 증설된 뒤의 얘기고 그거를 장래에 하자고 3년씩이나 그 많은 인건비를 소요됐다고 하는거는 이젠 학교 교장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차라리 인근에 있는 국민학교에게 파견을, 종사원들을 파견을 보내가지고 불편한 학교를 좀 도와주지 못할 망정 6명이나 되는 정규 직원을, 막대한 인건비를 그 소요하면서 또 학생들에게 이 아주 특혜를 주지않는 이런 교장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1년이면 '과 증과' 다 '실험실습비' 다 한 5억 내지 10억씩 지금 계속 제천 광산고등학교, 단양공고에 투자가 되는데 급식 그 급식사 운영이 아주 이렇게 미온적이라면 다른 것도 좀 이 구체적으로 감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님이 좀 내일이라도 그 감사과를 좀 파견을 해서 급식소 운영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뭐냐, 개선점이 뭐냐, 또 말

씀드린대로 기왕에 수억들여서 투자해 놓은 것 조금만 더 시설투자하면 전 학생에게 시설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좀 몇천만원 정도는 투자해 줄 수는 없는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다음 그 회기때는 개선점이라든지 문제점 또는 조치사항까지도 좀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저 이재희위원, 이젠 다음 회기에 답변해도 좋은 거죠?

● 이재희 위원

뭐 자료요청을 안했으니까.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요걸 좀 감안하셔서 검토해보시고 다음 회기때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상일위원 질의하세요.

● 부의장 이상일

부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이 각급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도 생활지도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매일 결과보고를 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충주 지역에서는 검찰청이 중심이 되서 범죠평방자원 봉사대라는 걸 조직을 했습니다.

충주·중원·음성 그리고 인제 반을 몇개 만들어서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또 하나는 "등하교길 학생보호" 이런 걸 해가지고 수백명이 자원 봉사자가 되서 인제 나서는 데 제가 접대 그 대표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런 얘길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학생지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부끄럽게도 그쪽에서 반응은 대단히 밀지 않는 태도로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형식적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밤늦게 하면은 "아 왜 우리 지도비도 안주면서 그러느냐" 그 저는 잘 모르지만 5천원씩 한번 교외생활지도 나가면은 그 활동비를 주시는가 본데 "그걸 안주면 안한다", "형식적이다", "한바퀴 돌고 간다"하는 걸로 대단히 선생님들의 교외생활지도를 나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펍 저도 부끄럽고 이래서는 안되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생활지도 선생님들만 나가시라고 하지 말고 2월달에 이렇게 요새 범죠평방도 많고 이런 달에는 좀 아 교장선생님이 좀 앞장서서서 생활지도 좀 하시고 아 끝났을때 추운데 다방에 가서 차를 한잔 좀 대접하든지 술이라도 한잔 대접하면서 격려해주면서 생활지도가 실질적으로 이 학부모들이 나서지 않아도 되야겠다 할 정도로 신뢰받는 생활지도가 됐으면 그쪽에서 남들이 보기에, 아니 선생님들이 하는 생활지도, 그저 모여서 한바퀴 돌고 "별일없어"하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생활지도 그 결과는 아마

매일 보고해서 뭐 어디 몇회 순회하고 학교부근의 불량만화나 그 음식점 순회했다는 보고는 매일 들어올 겁니다.

대단히 들어오는데, 지역주민들이 과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생활지도가 피부에 와닿는 정말 학생과 자녀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생활지도가 되느냐, 그거는 지역에서 불신을 하고 있는 걸 저희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차제에 실적 위주로 보고하는 데에만 신경쓰시지 마시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좀 앞장서셔서 생활지도 선생님들 사기도 좀 높여주시고 그래서 참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건 답변 필요없는 거죠?

그러면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서도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가만있어 보세요.

저 당해과장 중등장학과장 계시죠?

예, 요거 유념하셨다가 꼭 반영시

키세요.

예, 그러면 권혁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권혁풍입니다.

지금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기일 연장의 건이 제안이 되어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림과 동시에 저의 그 신상발언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면 권위원님 이 징계문제는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이 비공개로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 권혁풍 위원

예, 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 권혁풍 위원

예, 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비공개로 안하셔도 되겠어요?

비공개로 하신다면 지금 비공개를

선언해 드리겠어요.

● 권혁풍 위원

아니 지금 통과가 된.....

● 의장 김영세

지금 징계위원회 우리가 전에 비공개로 진행을 했어요.

● 권혁풍 위원

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답변을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면은 그게 또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라면 소위원회에서 하셔야 되고요.

● 권혁풍 위원

예, 그래서.....

● 의장 김영세

근데 이게 저 이미 의결이 된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결 번복은 안됩니다.

● 권혁풍 위원

기타, 기타, 아니 뭐 다른 걸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기타 안전처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 김응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거는 신상에 관한 문제고 대외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석상에선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찬동하십니까?

비공개로 하시는 거.

● 권혁풍 위원

아 제가 뭐 질문을 드리는 게 엄청난 뭐 비밀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 의장 김영세

아니 그러니까 신상에 관한 거니까

● 권혁풍 위원

다른 분의 신상이 아니라 저 발언자의 신상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비밀 대외 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질차상의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뭐 비공개를 굳이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의장 김영세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한번 말씀하세요.

("본인이 원한다면"하는 위원있음)

예, 본인이 공개를 해도 좋다고 하니까

● 권혁풍 위원

예, 제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 의장 김영세

예, 말씀하세요.

김응복 위원님 양해하시죠?

● 김응복 위원

아니, 답변에.....

● 권혁풍 위원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 김응복 위원

답변을 안하시는 걸 전제로 하신다면 지금 권위원 말씀따나 하겠는데

만일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공개가 오히려 여러가지 면에서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럼 저 권위원님

● 권혁풍 위원

아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 의장 김영세

이 저 권위원님 말씀이에요.

한가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권유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신상에 관한 문제고 여러가지 또 위원의 내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요청하든지 소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이 원만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꼭 본회의에서 하셔야겠습니까?

● 권혁풍 위원

글쎄, 저 뭐 문제가 나왔으니까 애기죠, 이 문제가 그 소위원회에서...

● 의장 김영세

아니 이것을 그러면 그 때 의결사

항일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이 질문은 저 소위원회에서 하세요.

● 김광수 위원

의장님!

● 의장 김영세

예.

● 김광수 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서 서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회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정회 동의를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계속)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모든 의사가 진행이 된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서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남일국민학교 과학관 방문이 있으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제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폐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광수, 감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1명

부교육감 박동기,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사회교육
체육과장 이광용,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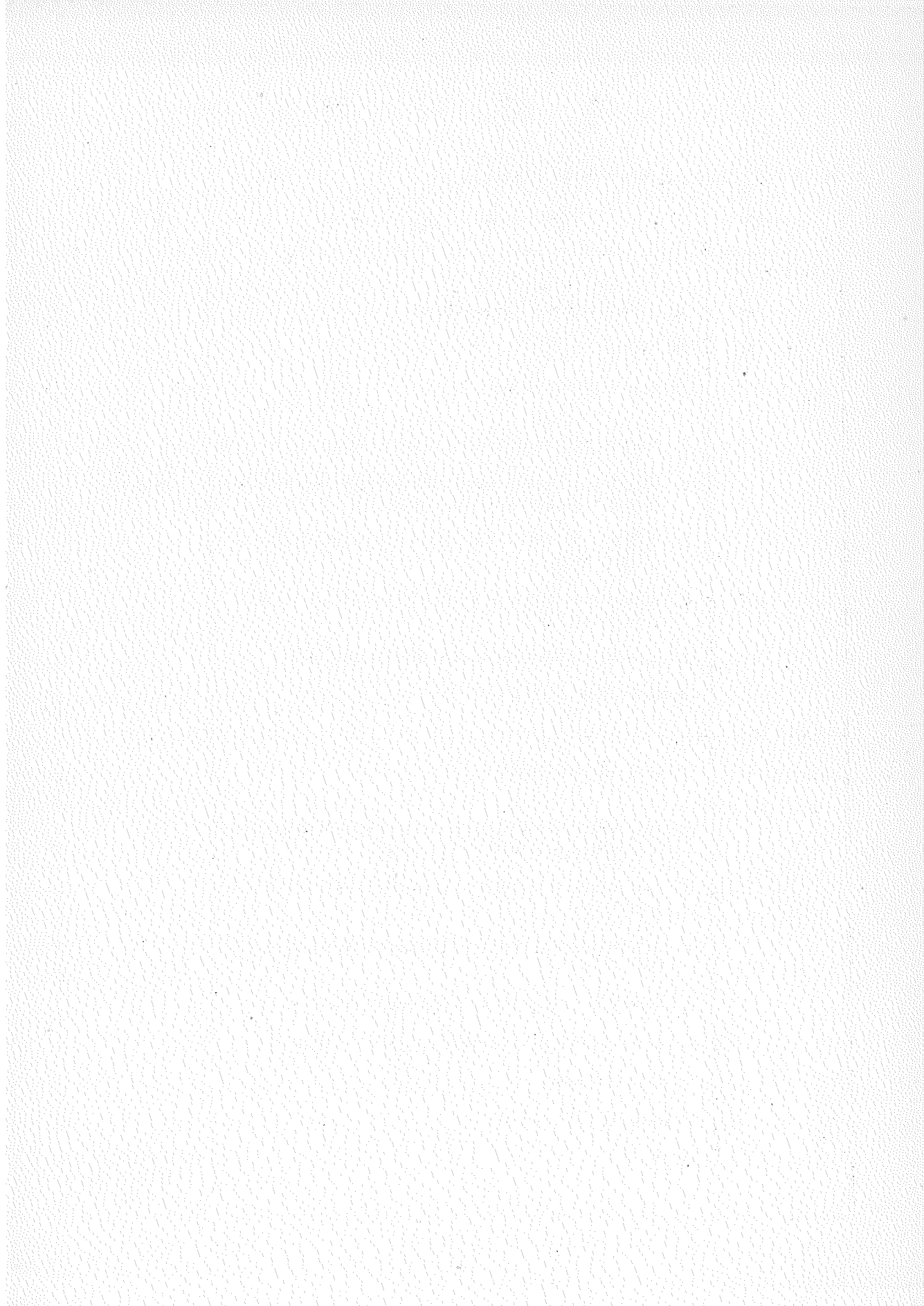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
례안 : 별첨 2
- 충청북도도서관 설치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3
- 충청북도학생야영장 설치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4
-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계획안 : 별첨 5

議 事 日 程(案)

第 34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臨 時 會)

1994.2.2 - 2.3(2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4.2.2(수) 11 : 00 14 : 00	※ 교육위원협의회(교육위원실)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제안설명 4.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5.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계획안 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산회】	회 기 2.2. - 2.3. (2일간)
2.3.(목) 10 : 30	【제2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2.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3.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의결 4.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계획안 의결 5.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 심사기일 연장의 건 6. 기타안건처리 【제2차 본회의 산회】 ※ 폐 회	※ 남일국교 과학관 방문 (14:30)



(별첨 2)

의안 번호	제 34 - 1 호
의결년월일	1994. 2. 3. (제 34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자	박병해 교육위원 외 3인
제안년월일	1994. 1. 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 - 1
----------	--------

제안년월일 : 1994. 1. 25.

제안자 : 박병해 교육위원 외 3인

□ 제안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4042호 : 1993. 12. 31.)으로 교육행정 직렬이 신설되어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이 변경되었기,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에 관한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3조 제3항과 제4항, 그리고 제4조 [별표]의 직급별년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직급명을 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별표)

□ 제안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제3조 제1항 관련)

□ 조례안 : 덧붙임.

□ 기타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과 제4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각각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별표】의 직급별단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한다.

부 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p>제1조(목적) 생략</p> <p>제2조(직무) 생략</p> <p>제3조(조직)</p> <p>①-② 생략</p> <p>③ 의사국에 의사과를 두고, 의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장 밑에 의안담당관 1인과 의안연구관 1인을 두되, 의안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안연구관은 5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p> <p>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생략</p> <p>제5조(직원의 파견 요청) 생략</p> <p>【 별표 】</p> <p>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에두는사무직원의정수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직 급 별</th> <th style="width: 10%;">정수</th> <th style="width: 6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일반 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r> <tr> <td>지방서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지방행정사무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지방행정주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지방행정주사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별 정 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 급 상 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기 능 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td> </tr> <tr> <td>지방사무보조원8등급 (속기요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지방사무보조원10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지방운전원10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body> </table>	직 급 별	정수	비고	합 계	14		○ 일반 직 계	7		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2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2		○ 별 정 직 계	1		5 급 상 당	1		○ 기 능 직 계	6		지방사무보조원8등급 (속기요원)	2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2		지방운전원10등급	2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직무) (현행과 같음)</p> <p>제3조(조직)</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지방교육행정사무관</p> <p>④ 지방교육 행정사무관</p> <p>제4조(사무직원의 정수)(현행과 같음)</p> <p>제5조(직원의 파견 요청)(현행과 같음)</p> <p>【 별표 】</p> <p>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에두는사무직원의정수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직 급 별</th> <th style="width: 10%;">정수</th> <th style="width: 6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지방교육행정사무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지방교육행정주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지방교육행정주사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직 급 별	정수	비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직 급 별	정수	비고																																																																							
합 계	14																																																																								
○ 일반 직 계	7																																																																								
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2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2																																																																								
○ 별 정 직 계	1																																																																								
5 급 상 당	1																																																																								
○ 기 능 직 계	6																																																																								
지방사무보조원8등급 (속기요원)	2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2																																																																								
지방운전원10등급	2																																																																								
직 급 별	정수	비고																																																																							
.....																																																																								
.....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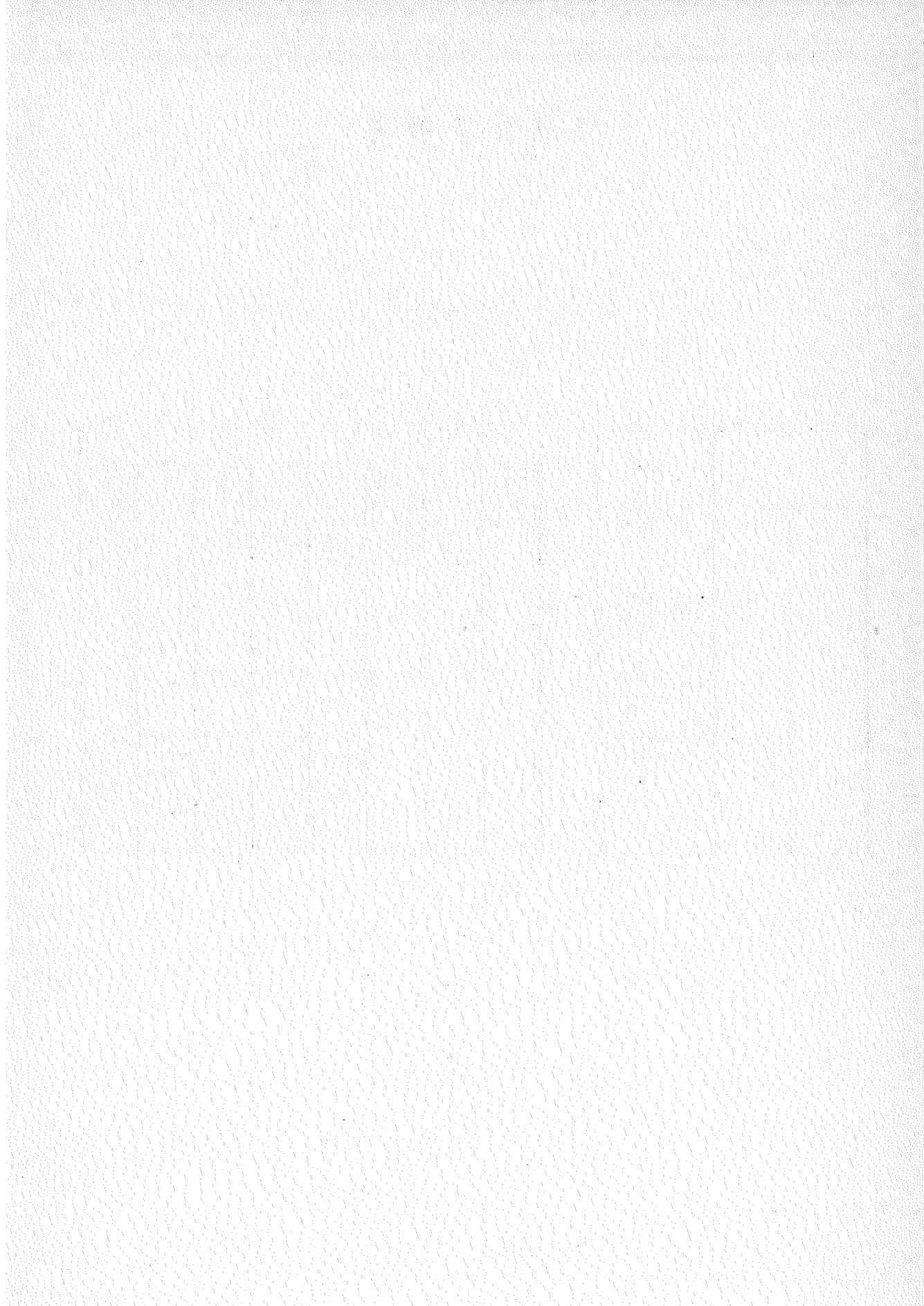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 1급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국제고 노동문화 문인공보 김통사계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정무사관	지방정주사	지방정주사보	지방정서기관	지방정서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교육정무사관	지방교육정주사	지방교육정주사보	지방교육정서기관	지방교육정서보



(별첨 3)

의안번호	제 74-2 호
의 결	1994. 2. 7 .
년 월 일	(제 74 회)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4. 1. 25 .

법무담당부서심사필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74-2
--------------	------

제출년월일 : 1994. 1. 2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042호, '93. 12. 31.)에 의하여 "교육행정"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직급 명칭중에 "교육행정"을 삽입하고자 함.
- 국무총리지시 제3호(총무처 '93. 4. 23.)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위원회' 명칭을 '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함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6조제2항).
- '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를 '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로 함 (안 제15조).
- 부칙 제2조에 의거 명칭 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내용 (안 부칙 제2조)
 -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함.
 -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하고, "자문위원회"를 "자문협의회"로 함.
 -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함.

□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042호, '93. 12. 31.)
- 국무총리지시 제3호(총무처 '93. 4. 23.)

□ 조 례 안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중 '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를 '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등에 따라 명칭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한다.

제10조제6호와 제11조중 '자문위원회'를 '자문협의회'로 한다.

③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한다.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대비표
 -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칙 제2조에 의거 개정하는 다른 조례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 각종 위원회 관리·운영지침

신 · 구조문대비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3조 (생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관장) ①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되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도서관장과 제천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기타 도서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4조 (관장) 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② (생략)		지방교육행정주사		
제5조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하부조직) ① (생략)		제5조 (현행과 같음)		
②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서과장 및 열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②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제7조 - 제14조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 (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 ①도서관 장서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관장이 정한 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②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15조 (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 ① 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
제16조 - 제17조 (생략)		②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		
		제16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등에 따라 명칭 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p> <p>②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항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한다.</p> <p>제10조제6호와 제11조중 "자문위원회"를 "자문협의회"로 한다.</p> <p>③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부칙 제2조에 의거 개정하는 다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명: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p> <p>제6조(하부조직) 회관에 총무과, 도서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도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6조(하부조직)</p> <p>. <u>지방교육행정사무관</u> .</p> <p>. <u>지방교육</u></p> <p><u>행정사무관</u></p>		
<p>제명: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p> <p>제6조(하부조직) ①(생략)</p> <p>②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p> <p>제10조(서무과) 1 - 5호(생략)</p> <p>6. <u>자문위원회</u> 운영에 관한 사항</p> <p>7 - 11호(생략)</p> <p>제11조(자문위원회) 과학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원 <u>자문위원회</u>를 둘 수 있다.</p>		<p>제6조(하부조직) ①(현행과 같음)</p> <p>②</p> <p>. <u>지방교육행정사무관</u></p> <p>또는 <u>지방교육행정주사</u></p> <p>제10조(서무과) 1 - 5호(현행과 같음)</p> <p>6. <u>자문협의회</u></p> <p>7 - 11호(현행과 같음)</p> <p>제11조(자문협의회)</p> <p>. <u>자문협의회</u></p>		
<p>제명: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p> <p>제3조(하부조직) ①(생략)</p> <p>②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p>		<p>제3조(하부조직) ①(현행과 같음)</p> <p>②</p> <p>. <u>지방교육행정사무관</u></p> <p>또는 <u>지방교육행정주사</u></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042호, '93. 12. 31)

[별표 1] 1급 내지 9급공무원 직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 행정	교육 행정	교육 행정	지방 교육행정 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 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이	하	생	략	

□ 각종 위원회 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의 관리·운영지침(국무총리지시 제3호, 총무처 '93. 4. 23)

-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경우에만 '위원회(또는 심의회)' 명칭을 사용한다.
- 기관내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령·조례·규칙 또는 훈령으로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협의회' 명칭을 사용한다.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the ...

(별첨 4)

의안번호	제 34-3 호
의 결	1994. 2. 3 .
년 월 일	(제 34 회)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 교육감
제출년월일	1994. 1. 25 .

법무담당부서심사필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1. 2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의 번	안 호	24-3
--------	--------	------

□ 개정이유

-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청원학생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대통령 제14042호, '93. 12. 31.)에 의거 '교육행정'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91. 3. 1.자로 폐교된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593번지에 위치한 미원국민학교 운암분교장을 학생야영장으로 전용코자 청원학생야영장을 설치함 (안 별표 1).
- 교육행정직렬의 신설에 따라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함 (안 제5조).

□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교육기관의 설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설치 승인)
- 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042호, '93. 12. 31.)

□ 조 례 안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청원학생아영장 설립계획안
- 청원학생아영장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 관계법령 발췌서
- 예산 조치사항 : 청원학생아영장 설립계획안 참고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 칭 및 위 치

명 칭	위 치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4번지
중원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 172번지
제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학현리 산 18-36번지
옥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016번지
영동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643번지
청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201-1번지
괴산학생야영장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102번지
음성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335번지
음성학생야영장 조촌분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549번지
청원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593번지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대비표
- 청원학생야영장설립계획안
- 청원학생야영장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 청소년기본법 제12조
 -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별표 1]

청원학생야영장설립계획안

1. 취 지

1991. 3. 1자로 폐교된 미원국민학교 운암분교장을 청소년 야영·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 .

2. 목 적

청소년들로 하여금 야영·수련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수련하고, 정서를 순화하고, 강인한 심성과 호연지기를 함양하며, 협동·봉사·질서 등 공동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

3. 명 칭 : 청원학생야영장

4. 설 립 자 : 충청북도교육감

5. 위 치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593번지

6. 수용인원 : 1회 200명, 연 5,000명

7. 개장년월일(예정) : 1994. 5. 1.

8. 입지조건

청주 - 보은간 국도변으로 청주에서 20KM 미원면 소재지에서 보은방면으로 5KM 떨어져 있으며, 학교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1KM 떨어진 곳에 박대천이 흐르고, 3KM 지점에 옥화대, 2KM 지점에 청석굴 등의 명소가 있어 야영·수련장으로 적합함.

9. 정원확보계획

구 분	야영장장	파견교사	별 정 직	기 능 직	합 계	비 고
인 원	1 (학무과장 겸직)	1	1	2	5	

10. 시설현황

가. 부 지 : 8,827㎡

나. 주요시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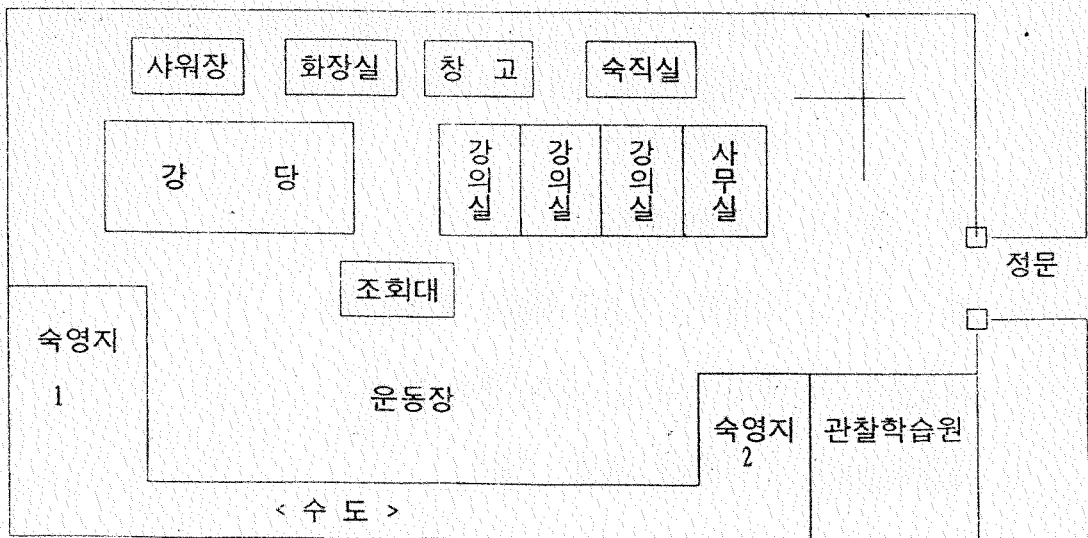
구 분	단 위	수 량	면적(㎡)	비 고
-	실	1	57	현관포함
-	실	3	223.20	
-	실	1	223.86	
-	실	1	45.45	
-	실	1	33.84	
-	실	1	26	
-	개소	1	20	수도꼭지 32개

11. 소요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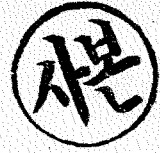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국 고 (문화체육부)	자 체	계	비 고
금 액	100,000	100,000	200,000	

12. 배 치



승 인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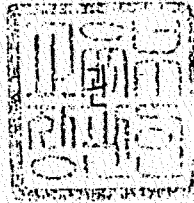
교행 12200-984

충청북도교육감

사회 82534-665 ('93. 6. 25)로 제출한 청원학생야영장 설치 승인 신청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 승인함.

1993. 12. 9.

교 육 부 장



승 인 사 항

1. 설치목적 : 학생들에게 단체야영 수련활동과 자연학습과정의 수련을 통하여 강인한 심성과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
2. 명 칭 : 청원학생야영장
3.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마원면 운암리 593
4. 시설규모 : 부지 8,827㎡, 건축연면적 806㎡
5. 개원예정시기 : 1994년 5월경. '끝'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법률 제4347호, '91. 3. 8.)

제41조 (교육기관의 설치) ①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감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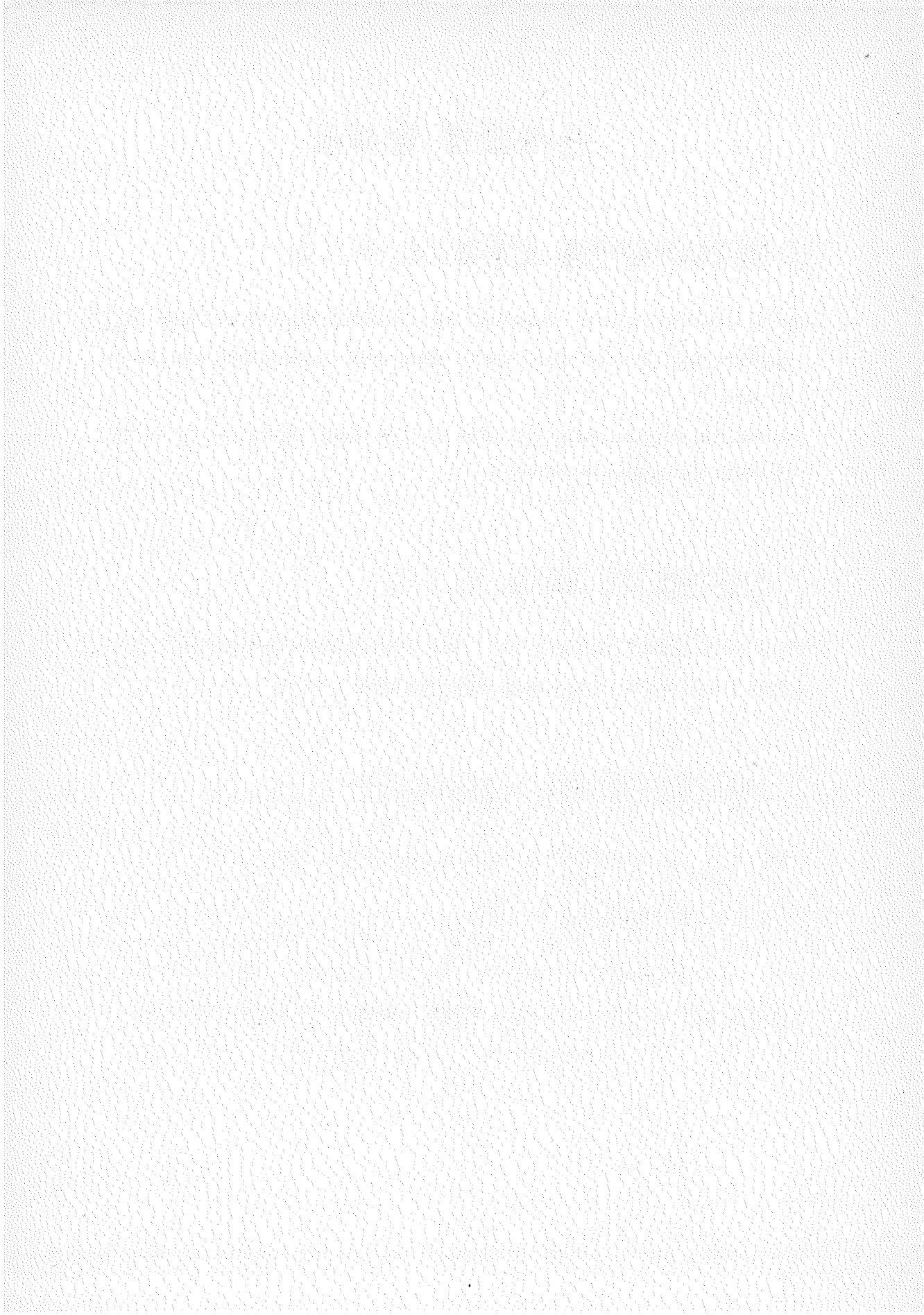
□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4477호, '91. 12. 31.)

제12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4042호, '93. 12. 31.)

[별표 1] 1급 내지 9급공무원 직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직군	직렬	직류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 행정	교육	교육	지 방	지 방	지 방	지 방	지 방
	행정	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
			사 무 관	주 사	주 사 보	서 기	서 기 보



(별첨 5)

의안 번호	제 34-4 호
의결년월일	1994. 2. 3. (제 34 회)

충청북도과학교육원 이전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4. 1. 29.

충청북도과학교육원이전계획안

의 연	안 호	34-4
--------	--------	------

제출년월일 : 1994. 1. 2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이전의 목적과 사유

- 과학교육원의 운영목표는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의 탐구학습 및 교원의 연구·연수 활동을 조장 지원하여 첨단과학시대를 주도할 능력있는 사람을 육성하고 교육현장을 선도하며, 국민생활 과학화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로 명시된 바,
- 현 위치는 도심지(청주)에서 15km 떨어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23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여 상설 전시물 관람 등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과학교육원 본래의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음. (별첨 1 참조)
- 학생 및 교원, 일반인의 내방의 편의를 도모하고 첨단과학기술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청주시 중심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과학교육원 본래의 역할과 학생들에게 과학의 꿈을 갖게 함으로서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이전시기 : '95. 3. 1

□ 이전위치 : 청주시 수동 180번지(현 교동국민학교)

□ 기존 충북과학교육원 활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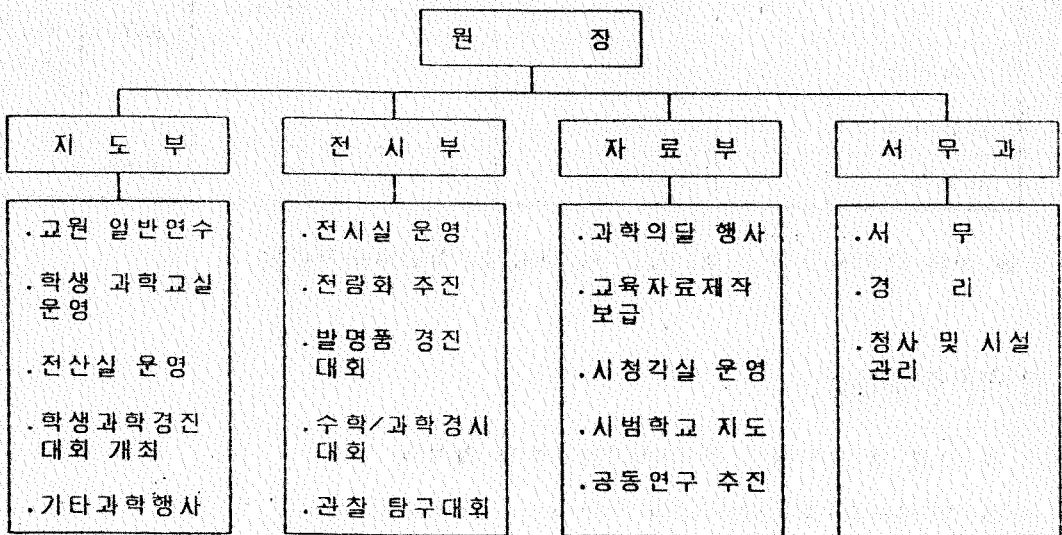
- 과학고등학교 학급수를 증설 모집하여 활용할 계획임.
(건물 활용계획서 별첨 2)

□ 이전지 시설활용 배치계획

- 추후 작성

□ 충북과학교육원의 조직 및 주요사업

1. 조직



2. 주요사업

- 별첨 3 참조

□ 현 과학교육원 시설현황

(면적단위: m²)

명 칭	수량	면적	비 고	명 칭	수량	면적	비 고
관 리 실	4	180	실당 45 m ²	기 재 실	1	45	
숙 직 실	1	45		공 작 실	1	90	
연 구 실	1	68		실 험 실	4	600	실당 150 m ²
방 송 실	1	68		준 비 실	4	300	실당 75 m ²
원 장 실	1	90		화 장 실	4	180	실당 45 m ²
상설전시장	3	607.5	실당 202.5	도서·열람실	1	292.5	
전 시 실	1	202.5		현관·계단		450	
강 의 실	2	315		기 타		667.5	복도 및 휴게실
과학공작실	1	90					
컴퓨터실	2	225					
시청각실	1	300		총 계		4,816	

※ 기타 옥외시설 : 온실, 기상대, 해시계, 실험폐수처리장

□ 이전후 기대효과

-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의 활성화
- 첨단과학기술 정보제공의 극대화
- 학생과학고실, 주부과학고실 운영으로 과학의 생활화에 기여

□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

- 교육부 이전계획 승인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해제 신청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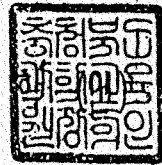
- 과학교육원장 의견서 1부
- 과학교육원 활용실적(별첨 1) 1부
- 현 과학교육원 활용계획서(별첨 2) 1부
- 과학교육원 주요사업(별첨 3) 1부. 끝.

의 건 서

- 0 청원군 가덕면 상아리 산 4-23 번지에 위치한 충청북도과학교육원은 과학기술 교육진흥에 많은 발전과 공헌을 하고 있으나,
- 0 현재의 위치는 도심지 (청주)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과 기자재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활용도가 극히 빈약한 실정임.
- 0 현 고등국민학교 부지에 현대적인 충청북도과학교육원을 신설하면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시대에 스스로 탐구하고 답사하는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과학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21세기 과학입국을 위한 초·중등 과학교육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95.3.1. 고등국민학교가 이전한 후에 충청북도과학교육원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원 이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994. 1.

충청북도과학교육원장 김 병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과학교육원 활용실적

□ 전시물 관람 학생수

(단위:명)

구 분	' 9 1	' 9 2	' 9 3	평 균	타도 관람 인원
관 랐 인 원 수	1,633	2,007	1,984	1,875	대전 : 85,000명 대구 : 25,000명 경기 : 35,000명

□ 교원연수 인원수

(단위:명)

구 분	기 간	' 9 1	' 9 2	' 9 3	년평균	비 고	
연 수 명	과학실험수	10일	80	120	80	93.4	
	컴퓨터수	28일	44	100	146	96.6	
	공통과학수	10일			40	40	
	계		124	220	266	230	

□ 과학교사 세미나 및 강연

구 분	' 9 1	' 9 2	' 9 3	년평균	비 고
회 수	4회	5회	5회	5회	
인 원	803명	469명	988명	754명	

□ 컴퓨터교육

구 분	' 9 1	' 9 2	' 9 3	년평균	비 고
회 수	19회	8회	11회	13회	
인 원	796명	440명	515명	584명	

□ 학생과학교실 운영

(단위:명)

구 분	' 9 1	' 9 2	' 9 3	년평균	비 고
과학교실		3개교 161명	34개교 1,274명	19개교 717명	과학관 수업
이동과학교실	17개교 1,482명	33개교 1,107명	48개교 1,577명	33개교 1,389명	당해학교 수업
계	17개교 1,482명	36개교 1,268명	82개교 2,849명	45개교 1,867명	

□ 과학행사

행 사 명	행사기간	' 9 1	' 9 2	' 9 3	년평균
과학전람회	7일간	80점 149명	102점 177명	107점 179명	97점 169명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5일간	112점 112명	115점 115명	120점 120명	116점 116명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2일간	341명	294명	240명	292명
수학/과학 경진대회	2일간		491명	534명	513명
탐구 관찰 발표대회	1일			51명	51명
과학생활 모범사례 발표대회	1일	30명	29명	29명	29명
과학독후감 발표대회	1일	107명	110명	110명	109명
계		739명	1,216명	1,263명	1,279명

현 과학교육원시설 활용계획

충북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학급을 증설하고 시설을 개조하여 활용할 예정임

1. 학급증설

구 분	1 학년	2 학년	3 학년	계
현인가학급수	2	2	1	5
증설후학급수	3	3	3	9

2. 시설개조

가. 식당 신설

전교 학생 270명이 단재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단재교육원의 연수 계획에 따라 현 식당으로는 수용 능력이 부족될 것으로 사료되어 1층 275㎡의 식당 신설

나. 교실 개조

보통교실이 부족하여 3개 교실 개조

다. 기숙사 개조

기숙사는 별동의 42실에 179명을 수용하고 있으나 총 학생 270명으로 일부 2학년의 대학 진학하는 수료자를 감안하여 4층에 76명(여학생 수용)의 학생을 수용할 기숙사로 개조

라. 세면장 증설

4층을 기숙사로 개조하면 45㎡의 세면장은 부족하여 67.5㎡의 화장실 및 세면장 증설

3. 현 과학교육원 건물 배치도

【 1 층 】 (단위 : ㎡)

	자 료 실 67.5		숙 직 실 45	도 서 실 67.5	화 장 실 45	계 단
식 당 275						
		현 관	서 무 실 45	교 장 실 45	양 호 실 45	등 사 실 45

【 2 층 】 (단위 : ㎡)

독 서 실 202.5			독 서 실 112.5	화 장 실 45	계 단
독 서 실 202.5		연 구 실 90	교 무 실 112.5	독 서 실 90	

【 3 층 】 (단위 : ㎡)

교 실 3 - 1 67.5	교 실 3 - 2 67.5	교 실 3 - 3 67.5		컴 퓨 터 실 112.5	화 장 실 45	계 단
교 실 1 - 1 67.5	교 실 1 - 2 67.5	교 실 1 - 3 67.5	어 학 실 90	교 실 2 - 1 67.5	교 실 2 - 2 67.5	교 실 2 - 3 67.5

【 4 층 】 (단위 : ㎡)

		세 면 장 67.5	세 면 장 45	화 장 실 45	계 단
기 숙 사 486					
	휴 계 실 90		기 숙 사 202.5		

※ 실험실습동은 구조변경 없이 활용

과학교육원 주요사업

사 업 명	대 상	추진기간	사 업 량	비 고
학생과학교실 운영	국.중.고학생	4 - 11	33개교 19개교	이동과학 교실
과학교사 일반연수	중.고교사	7 - 8	중교사 40명 고교사 40명	12일간
컴퓨터 담당교사 일반 연수	국.중.고교사	7 - 8 12 - 1	75명 } 계 150명 75명 }	24일간
과학의 달 행사	학생, 교원, 일반인	4 - 5	5개 행사: 940명	
과학기술교육 시범학교 운영지도	국.중.고교	1 - 12	5개교 (국1, 중1, 고3)	
컴퓨터교육센터 운영	학생, 교사, 일반인	1 - 12	교육인원: 500명 S/W 보급: 42000명	
과학실험실 운영	학생, 교사	3 - 12	연중 활용	
시청각자료실 운영	지역교육청 및 학교	1 - 12	자료복사보급: 4,200편 목록발간: 650부	
상설전시장 운영	학생, 교원, 일반인	1 - 12	전시물관람인원 2,000명	
과학전람회	학생, 교원	6 - 7	도대회 110점 전국대회 20점	
학생과학발명품 경진 대회	국.중.고학생	5 - 8	도대회 120점 전국대회 20점	
수학/과학 경시대회	중.고학생	5 - 7	도대회 500명 전국대회 18명	수학, 물리 화학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국.중학생	5 - 11	도대회 240명 전국대회 40명	5개 종목
학생관찰 탐구발표대회	국.중학생	9 - 10	3개분야: 33명	시군대회 실시
충북과학지 발간 보급	학교 및 유관 기관	1 - 12	700부	
생물사육재배 및 채집 안내서	국.중.고교	5 - 12	700부	전국과학고 교육원 공동 사업

충북과학교육원 이전에 따른 기존건물 활용 대책과 시설확충계획

1. 기존건물상태

- 가. 본관(3층 건물:2,209.8㎡)건물은 1970년에 건축한 철근콘크리트건물로 비교적 양호함.
- 나. 후관(2층 건물:856.8㎡)건물은 1987년 건축한 철근콘크리트건물로 기초에 파일 지정을 하여 증축이 가능하며 건물상태가 양호함.

2. 기존건물 활용방안

- 가. 본관은 1층에 관리동과 2층에 강의실동, 3층에 분임토의실을 두어 실규모에 맞게 활용코자 하며,
- 나. 후관은 1층에 목공실과 공작실을, 2층은 칸막이를 철거하여 컴퓨터실로 개조하여 사용코자 함.

3. 부족시설확충(덧붙임 참조)

- 가. '94년도에 후관 3층과 동편에 실험실동을 건축하고,
- 나. '95년도에 본관 후편에 강당, 해양탐구실, 시청각실, 천체실 등을 건축하며, 기존건물(본관) 내.외부 수선을 하고,
- 다. 옥외에 온실과 수목원을 조성하고 운동장바닥 일부를 포장한다.